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

※ 행정자치부(경상북도)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 사항 임.

2. 주요골자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반복되는 어휘의 조문 간결화(안 제2조)

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 등으로 보아 감면혜택 부여(안 제2조, 제3조)

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3조 신설)

3. 참고사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경상북도 재정과-12662(2004.11. 6)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7장 보칙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종합토지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생략)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각호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 ②-----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장 보칙 제28조 ~ 제32조 (생략) <u>〈신설〉</u>	제7장 보칙 제28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u>제33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u> <u>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u> <u>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u> <u>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u>

관련 법령 발췌

□ 5·18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협동화"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제1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